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7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5월 24일
- 회 부 일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여 왔음.
- 전문성 있는 민간 운영주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활용해 사업성과를 제고하여 왔음.
- 2013년 7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최초로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중간지원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대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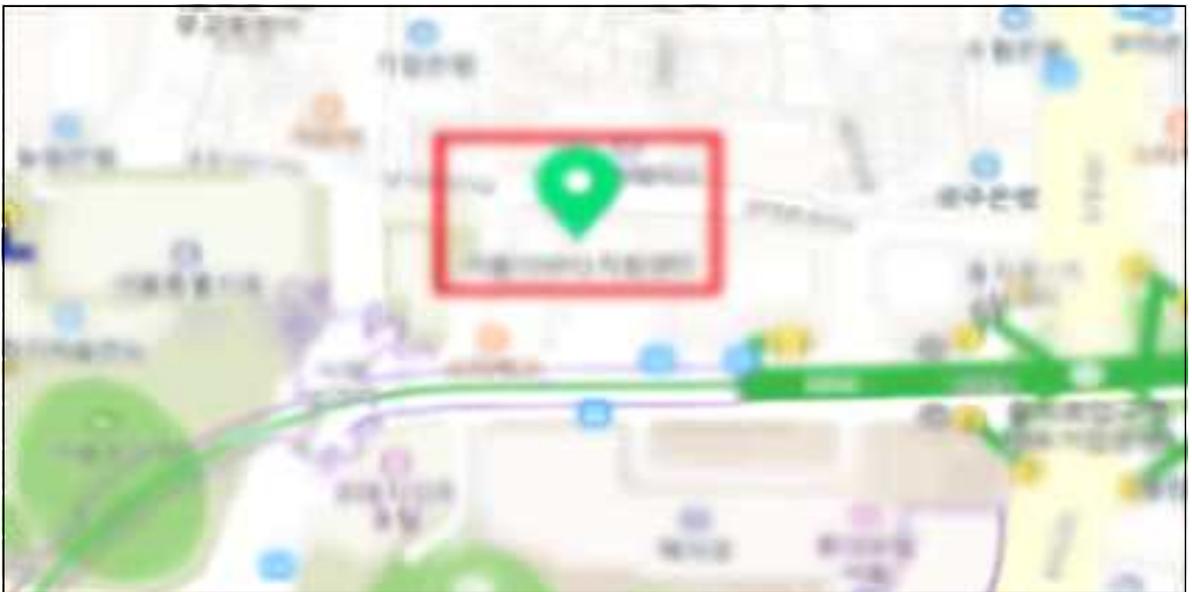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
- ③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④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⑤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⑥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⑦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⑧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⑨ 그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 개관시기 : 2014년 10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시설규모 : 전용 867.4 m^2
 - 1층: 열린 공간(310 m^2 , 약93평) ⇨ 대강당, 전시공간 등
 - 2층: 사무 공간(557 m^2 , 약169평) ⇨ 협업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육장 등



<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19.11.15. ~ 2022.11.1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19년 소요예산 : 2,282,835천원
 - 민간위탁금 2,283백만원 (인건비 845, 운영비 412, 사업비 1,026)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할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위탁)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019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1)에 따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2013년 11월 최초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2019.3.)된 민간위탁 조례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본 동의안은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 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현황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심의기구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사업범위	서울시 전역
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단위 NPO 지원 총괄 · NPO역량강화, 지속가능성 지원 · 공익활동 기반조성 및 제도·정책 발굴 · NPO 정책역량 강화 등
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규모	전용 868㎡
주요시설	· 다목적강당,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명 - 센터장1, 실장2, 직원13
소요예산	2,283백만원('19년도)
민간위탁	2013년 11월(사단법인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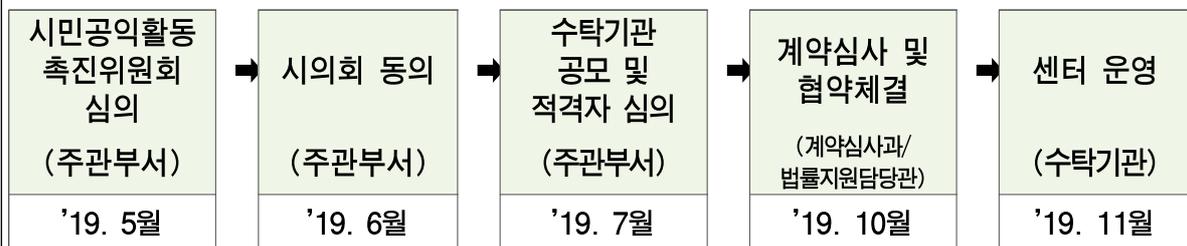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2019.11.15. ~ 2022.11.14.)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 사업비: 2,283백만원(인건비 845, 운영비 412, 사업비 1,026)
- 위·수탁 사무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세부 추진 절차



※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서울시는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 (사단법인 시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동북권 NPO 지원센터”를 민간(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에 위탁하였고, 2019년 “동남권 NPO지원센터”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치 추진 〉

- 주요기능 : 동남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사업범위 : 서초·강남·송파·강동구(4개 구)
- 추진계획 : ('19)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8월) → 센터 설치 및 수탁자 공모
- '19 예산 : 250백만원(임차료50, 보증금100, 내부수선100)

- 한편, 금천구(2016년)와 노원구(2017년), 중랑구(2019년)는 독자적인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2019. 5월 기준)

연 번	자치구	근거 조례	센터명	개소	직영/위탁 (수탁법인)	인력 (명)	예산 ('19년/백만원)
1	금천구	-	금천구NPO지원센터	2016	직영	-	1.5
2	노원구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시민사회(NPO) 지원센터	2017	직영	-	-
3	중랑구	-	중랑구NPO지원센터	2019	직영	1	69

- 향후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생활의제,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 촉진을 ‘권역별 NPO센터’의 조성 또는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동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이후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고(2013년 7월),
 -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2016년 11월 재계약('16. 11. 15. ~ '19. 11. 14.(3년))을 체결하였음.
 -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가칭)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 '12. 11월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13. 5. 16.

〈최초위탁〉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결 : '13. 7. 14.
- 수탁기관 공모 : (1차)'13. 8. 26.~9. 25. (재공고)9. 27.~10. 11.
-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 '13. 10. 16.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시민(이사장 권미혁)
- 위수탁 협약 체결 : '13. 11. 15. ~ '16. 11. 14.(3년)
-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 '14. 9. 11.
 - 사유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사항 협약서 반영 △센터 위치 변경
- 서울시 NPO지원센터 정식 개관 : '14. 10. 1.

<재계약>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16. 2~4월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 : '16. 6. 3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6. 7. 19.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270회) : '16. 8. 31.
- 위수탁 협약 체결(재계약) : '16. 11. 15. ~ '19. 11. 14.(3년)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19. 2~4월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4월

-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관주도의 직영방식보다 독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기반의 비영리단체 역량 강화 및 지역 단위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동 센터의 성과 평가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주요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자격 충족하여 3년 재계약
-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5점으로 사업성과 '매우 우수' 수준 평점

평가범주	사업 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시민 만족도	합계
배점	24	13	43	5	15	100
득점	19.42	10.43	37.76	4.50	13.35	85.46

- **주요 사업성과**

- ('13~'16) NPO조직운영 역량강화, 미트쉐어, 활동가 역량강화, 공간지원 등
- ('16~'19) NPO조직변화 지원, 국제컨퍼런스, 파트너페어, 정책연구 등

- 다만,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민간위탁의 운영 성과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서울시는 “NPO 활동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 촉진” 등의 지원활동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 중복 등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시민사회, 공유경제,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청”, “청년허브”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상황임.

- 둘째,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23억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단위 : 백만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력
2019	2,283	845	412	1,026	16명

- 셋째, 동 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의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심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²⁾과,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비중 분석 〉

- 사업비 비중 : 2016년 43.82%→2017년 49.74%→2018년 41.20%
- 인건비 비중 : 2016년 32.00%→2017년 30.51%→2018년 37.96%
- 운영비 비중 : 2016년 24.18%→2017년 19.75%→2018년 20.84%

- 사업 성과 측정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측정기준이 부재한바,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목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³⁾도 있었음.
- 또한, 매년 다수의 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2명, 2017년 5명, 2018년 2명)하고 있으며, 특히 실장 및 팀장급의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직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⁴⁾된다고 하겠으며,
-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 미공개와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용역을 준 사례가 있음이 지적⁵⁾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탁 사무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19.4, 6쪽)

3)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19.4, 7쪽)

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19.4, 27쪽)

5)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2019.4, 5쪽, 45쪽)

- 한편, 현재 운영중인 동 법인(사단법인 시민)은(참고자료 1 참조) 재계약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조례를 미준수한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p>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u> 2.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직전 센터장이 동 센터의 업무와 예산을 총괄하는 서울시 국장(서울시 개방형직위 3호)으로 임용되어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바,

-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 진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의사지원팀장 : 박희숙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자료 1

〈수탁 법인 현황〉

1. 이사장 : 임현진(임기 : '17. 7. 13. ~ 현재)

- 서울대 명예교수, 현 국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경실련 공동대표

〈 역대 이사장 현황 〉
▪ 권미혁('13.2.26. ~ '15.10.1.) : 20대 국회의원(행안위, 더불어민주당) 前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정현백('15.10.1. ~ '17.6.12.) : 前 여성가족부장관('17.7.~'18.9) 前 참여연대 공동대표

2. 설립목적 :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3. 주요사업

- 활동가역량강화, 시민펠로우 사업(비영리공익활동가 경험공유, 시상)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등
- 시민사회와 각계와의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4. 법인연혁

연도	주요 내용
'13.2.26.	사단법인 시민 창립
'13.6.13.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3.11.~현재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
2015	시민교육포럼 개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라운드 토론회 개최 (주)카카오 공익활동 촉진 및 건전한 기부문화 창출을 업무협약 체결
2016	2기 시민펠로우 현장운동시리즈, 시민 공익자료발간시리즈 발간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 재계약 2016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성과 공유대회
2017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담회 민주시민교육포럼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국무총리실)
2018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활성화 세미나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컨설팅/네트워킹)

참고자료 2

최근 4년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집행 현황

연 도	예산액	실교부액(A)	집행액(B)	정산액(A-B) (반납액)	집행률(B/A)
2016	1,877,620	1,842,362	1,682,510	159,852	91.3%
2017	2,371,377	2,284,462	2,090,343	194,119	91.5%
2018	1,941,806	1,941,806	1,842,279	99,527	94.9%

○ 2019년 (5월 기준)

(단위 : 천원)

	교부예정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2,199,034	560,253	25.5
인건비 소계	837,443	248,843	29.7
기본급	518,579	142,188	27.4
제수당	254,445	74,446	27.0
퇴직충당금	64,419	32,209	50.0
운영비 소계	409,616	147,156	35.9
보험료	72,592	18,317	25.4
여 비	10,308	1,176	11.4
교육훈련비	8,300	791	9.5
우편통신비	7,910	3,112	39.3
유인물비	3,500	1,236	35.3
교통유발부담금	1,549	0	0.0
도서구입비	400	133	33.3
사무용품비	5,819	1,213	20.8
급량비	3,600	1,100	30.6
업무추진비	6,900	1,349	19.5
건물관리비	226,452	94,404	41.7
보증보험료	587	145	24.7
복리후생비	4,800	300	6.3

범용S/W 구입비	500	0	0.0
사무운영프로그램비	6,385	2,974	46.6
지급수수료	9,455	3,852	40.7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4,926	9,039	36.3
자산취득비	4,750	4,424	93.1
운영수당	4,884	2,090	42.8
네트워크추진비	6,000	1,500	25.0
사업비 소계	951,976	164,254	17.3
사업설명회	12,438	12,189	98.0
조직변화지원사업	95,270	70,491	74.0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91,260	5,472	6.0
활동가역량강화지원사업	66,420	2,203	3.3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1,700	569	33.4
NPO참여예산제	73,909	4,311	5.8
NPO지원박람회	143,010	50,706	35.5
NPO상담소	33,921	0	0
대외협력	57,600	1,005	1.7
국제컨퍼런스	136,360	0	0
시민사회발전연구	141,540	3,711	2.6
홍보	53,230	11,533	21.7
정보아카이브	45,317	2,064	4.6

○ 2018년

(단위 : 천원)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집행률(%)
총계	1,941,806	1,842,279	99,527	94.9
인건비 소계	737,100	717,810	19,290	97.4
기본급	457,200	449,655	7,545	98.3
제수당	223,200	211,455	11,745	95.2
퇴직충당금	56,700	56,700	-	100.0
운영비 소계	404,706	382,271	22,435	94.5
보험료	63,680	55,200	8,480	86.3
사무용품비	7,188	6,818	370	94.9
유인물비	7,336	4,844	2,492	66.0
도서구입비	1,200	792	408	66.0
급량비	5,220	5,072	148	97.2
건물관리비	228,600	228,139	461	99.8
보증보험료등	588	474	114	80.6
복리후생비	300	288	12	96.0
범용S/W구입비	1,902	1,902	-	100.0
사무운영프로그램비	3,805	3,798	7	99.8
우편통신비	8,774	8,121	653	92.6
지급수수료	11,915	8,920	2,995	74.9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3,099	21,102	1,997	91.4
교육훈련비	7,724	6,905	819	89.4
운영수당	6,256	3,702	2,554	59.2
국내여비	13,270	12,381	889	93.3
업무추진비	6,300	6,264	36	99.4
교통유발부담금	1,549	1,549	-	100.0
네트워크추진비	6,000	6,000	-	100.0
사업비 소계	800,000	742,198	57,802	92.8
조직변화지원사업	96,500	89,981	6,519	93.2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80,000	78,097	1,903	97.6
활동가역량강화지원	48,500	48,289	211	99.6
공익활동가포럼	15,000	15,000	-	100.0
NPO 국제컨퍼런스	140,000	132,490	7,510	94.6
NPO지원박람회	120,000	118,440	1,560	98.7
NPO상담소	30,000	27,475	2,525	91.6
시민사회 발전연구	64,181	52,132	12,049	81.2
대외 협력사업	35,400	24,287	11,113	68.6
홍보	110,506	104,061	6,445	94.2
정보아카이브	19,994	18,796	1,198	94.0
공간나눔지원	900	900	-	100.0
공익활동거점공간활성화	39,019	32,250	6,769	82.7

○ 2017년

(단위 : 천원)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집행률(%)
총계	2,284,462	2,090,343	194,119	91.5
인건비 소계	696,995	671,810	25,185	96.4
기본급	434,294	426,257	8,037	98.1
제수당	209,086	191,938	17,148	96.5
퇴직충당금	53,615	53,615	0	100.0
운영비 소계	451,081	419,960	31,121	93.1
보험료	59,571	51,975	7,596	88.2
사무용품비	7,569	6,425	1,144	84.9
자산및물품취득비	28,893	27,697	1,196	95.9
도서,인쇄비	12,628	7,597	5,031	60.2
급량비	10,752	4,416	6,336	41.1
건물관리비	228,600	228,314	286	99.9
보증보험료등	557	442	115	79.4
복리후생비	300	209	91	69.7
범용S/W구입비	9,537	9,470	67	99.3
공공요금	11,753	10,475	1,278	89.1
지급수수료	9,010	11,483	(2,473)	127.4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8,470	29,719	(1,249)	104.4
교육훈련비	14,325	8,052	6,273	56.2
운영수당	6,436	3,644	2,792	56.6
국내여비	10,380	7,742	2,638	74.6
업무추진비	6,300	6,300	0	100.0
네트워크추진비	6,000	6,000	0	100.0
사업비 소계	1,136,386	998,573	137,813	87.9
조직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72,560	63,622	8,938	87.7
실무역량강화_해본다학 교	32,270	31,787	483	98.5
NPO혁신지원	25,482	23,149	2,333	90.8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266,072	240,535	25,537	90.4
미래역량강화교육 _활력신공	82,789	81,787	1,002	98.8
시민공익활동촉진 (미트쉐어)	109,932	80,473	29,459	73.2
NPO서울의제 지원	121,439	88,932	32,507	73.2
NPO 국제컨퍼런스	121,740	121,303	437	99.6
시민사회발전연구	103,283	88,002	15,281	85.2
NPO지원박람회(파트너 페어)	75,586	75,586	0	100.0
대외협력사업	51,415	40,383	11,032	78.5
홍보정보아카이브	72,160	62,033	10,127	86.0
공익활동협업공간지원	1,658	981	677	59.2

○ 2016년

(단위 : 천원)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집행률(%)
총계	1,842,362	1,682,510	159,852	91.3
인건비 소계	589,539	589,511	28	100.0
기본급	380,421	382,834	(2,413)	100.6
제수당	168,245	165,804	2,441	97.9
퇴직충당금	40,872	40,872	0	100.0
운영비 소계	445,462	384,435	61,027	86.3
보험료	51,168	47,157	4,011	88.5
사무용품비	4,837	4,654	183	96.2
자산및물품취득비	6,049	5,998	51	99.2
도서인쇄비	7,151	6,440	711	90.1
급량비	8,568	2,403	6,165	28.1
건물관리비	267,828	228,230	39,598	85.2
보증보험료등	600	1,387	(787)	231.2
복리후생비	280	260	20	92.9
범용S/W구입비	6,090	6,247	(157)	102.6
공공요금및제세	6,732	7,033	(301)	104.5
지급수수료	8,995	8,981	14	99.8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7,629	38,575	9,054	81.0
교육훈련비	8,372	8,073	299	96.4
운영수당	6,023	5,420	603	90.0
국내여비	8,840	7,287	1,553	82.4
업무추진비	6,300	6,288	12	99.8
사업비 소계	807,361	708,563	98,798	87.8
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지원	55,362	53,345	2,019	96.4
조직역량강화컨설팅	53,210	40,983	12,227	77.0
공익활동협업공간지원	4,214	3,640	574	86.4
프로보노연계사업	5,030	1,931	3,099	38.4
활동기핵심역량강화교육	104,940	100,603	4,337	95.9
민관협력의이해워크숍	10,550	9,557	993	90.6
공익활동정보아카이브	58,587	56,128	2,459	95.8
홍보	48,877	48,049	828	98.3
2016NPO의제포럼X서울	104,640	69,767	34,873	66.7
지역의제네트워크구축	164,665	144,108	20,557	87.5
시민공익활동지원	127,743	120,553	7,190	94.4
네트워크협력사업	11,745	7,517	4,227	64.0
정책포럼	9,515	7,168	2,346	75.3
공간조성시범사업	24,768	22,144	2,623	89.4
민관협력/시민사회지원시스 탐구축사례연구	23,515	23,070	445	98.1